

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

의안 번호	202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특별시는 물재생센터의 기술전문성 향상과 경영혁신을 위해 위탁 운영하던 서남·탄천 물재생센터를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'21년초 지방공단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 전환을 추진중임

나. 「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 (대행사업)에 의거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서남·탄천물재생센터의 관리 운영을 대행하고자 시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대행사무 : 서남·탄천 물재생센터 운영 및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등
- 대행기간 : 협약일로부터 ~ '23. 12. 31.
- 소요예산 : 192,138백만원(2021년)

※ 소요예산은 예산심사 등의 사유로 변경 가능성이 있음

나. 시설 현황

- 서남물재생센터
 - 위치 :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
 - 부지면적 : 1,032천 m^2 (건물면적 : 64개동 80,152 m^2)
 - 시설용량 : 163만 m^3 /일
 - 차집관로 : 99km(7개소)

- 처리구역 : 143.23 km^2 (9개구 1개시)
 - 전역 : 영등포·관악·동작·구로·양천·금천·강서구
 - 일부 : 강남·서초·광명시

○ 탄천물재생센터

- 위 치 : 강남구 개포로 625
- 부지면적 : 393,000 m^2 (건물면적 : 85개동 39,427 m^2)
- 시설용량 : 90만 m^3 /일
- 차집관로 : 107km(하천수 7개소)
- 처리구역 : 80.21 km^2
 - 전역 : 강동·송파구
 - 일부 : 강남·서초·과천·하남시

다. 주요 위탁 사항

- 물재생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유지보수
-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의 관리·운영 및 유지보수
- 하수 처리 및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
-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등
- 물재생시설 외 부대시설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하수도법,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【하수도법】

제19조의2(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)

-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관리대행업자"라 한다)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·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

【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】

제19조(대행사업)

-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.
 1. 다른 조례에서 “위탁한다”고 규정한 경우
 2.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인 경우. 다만, 추가사업이 구조물을 수반할 경우에는 동일부지 내 또는 인접한 부지 내에서의 사업에 한함
 3.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김성관(☎ 2133-3847)